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0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3. 23. 김원순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04. 03.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4.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정이유

전입주민이 현재 유일한 고성군 인구증가의 요인이 되어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에도 불구하고, 전입 초기 문화적·사회적·인적 거리감으로 인해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돕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전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지역정보 제공, 적응 교육,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체육대회 등 화합 지원, 전입주민의 재능기부, 정착 협력 장려를 위한 마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전입주민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전입주민 정착을 위한 사업 설계에 필요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 정책·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정착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10호

- 예고기간: 2023. 3. 27.(월) ~ 2023. 4. 3.(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조례 제정의 취지

- 고성군 전입 주민이 지역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정착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가 전입주민 정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입주민을 위해 정보 제공·교육·지역사회 참여 등의 사업을 지원 하고, 전입주민의 정착 협력 지원사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입주민 정착에 기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전입주민의 정보제공신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입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2년마다 전입주민 생활실태와 지역주민과의 협력 정도 등을 조사하여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지원사업의 효과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업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착지원센터 위수탁 등에 대해 당사자인 전입주민과 지역공동체 대표(군 이장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 일방향의 정책 수립을 하지 않도록 함.
- 정착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 종합의견

- 전입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지원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입자 다수가 귀촌인에 해당되고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 등의 이주 준비부터 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안 제12조의 정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전입주민 정착 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전입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되 양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4. 12. 원안가결 함.